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53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 윤후덕 · 김정호 · 신영대

정준호 • 박희승 • 이연희

정성호・박 정・이병진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 자를 피선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	<u><삭 제></u>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	
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	
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	
한을 대행한다.	
<u><신 설></u>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
	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
	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
	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關位)
	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u>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u> 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